



국 세 청

보다 나은 정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협조 요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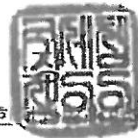
1.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 드립니다.
2.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2018년도부터 공제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3.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·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,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'장애인증명서'가 발급될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기간은 장애인증명서 서식 '장애예상기간' 에 기입하고,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임을 발행자 날인란 하단 여백에 부기

- 붙임 : 1. 장애인증명서 서식 1부.
2. 관참고자료(관련규정) 1부 끝.



국 세 청

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간호협회장, 대한한의사협회장, 대한한방병원협회장

국세조사관 한세영 행정사무관 서승희 원천세과장 이판식 전결 2018. 11. 28.

협조자

시행 원천세과-940 (2018. 11. 29.) 접수

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-14 / <http://www.nts.go.kr>

전화번호 044 204 3349 팩스번호 050 31124817 / rarry1024@nts.go.kr / 비공개(6)